

< 교정재범예측지표(재심사) >

평가항목	평 가 점 수				고려사항 예시
	1점	2점	3점	4점	
경비처우급	S1급	S2급	S3급	S4급	▸ 심사시 경비처우급
교정처우성과	매우 높음	높음	보통	처우성과 없음	▸ 매우높음 : 학사고시이상 학위취득, 기사이상 자격취득, 전국대회 입상, 교정작품 전시회 입상 ▸ 높음 : 전문학사, 산업기사, 지방대회 입상, 집중인성교육 이수, 심화교육 이수(합산 200시간 이상) 등 ▸ 보통 : 기능사, 한자검정능력취득, 칭찬수형자 등 기관내 표창수상, 각종 정보화 자격, 외국어 전문과정 수료
형집행기간	형기 5/6경과	형기 2/3경과	-	-	▸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20년시점과 이후 매3년 시점은 형기 5/6경과로 평가
교정성적	8점이상 (7점이상)	7점 (6점이상)	6점 (5점이상)	5점이하 (4점이상)	▸ 심사시 평정 소득점수 기준 ▸ 5/6를 경과한 무기형 또는 20년 초과자의 경우에는 ()점수 적용
징벌관련사항	징벌 없음	경고	경고·금치외 처분	금치 1회 이상	▸ 심사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징벌 유무
미납 벌금 여부(또는 추가형)	없음	벌금 5백만원 미만	벌금 1천만원 미만	벌금 1천만원 이상 (추가형 있음)	▸ 합당한 벌금액수 기준 ▸ 예정된 추가형 또는 집행유예실효 ▸ 미납된 벌금 등 고려

총 점	9점 이하	10~12점	13~15점	16점 이상
재범가능성	낮 음	보 통	높 음	매우 높음

평가지기	총 점	조정된 REPI 등급	평가일	평가자(직급/성명)
2/3심사	점	REPI-	. . .	
추가심사	점	REPI-	. . .	
추가심사	점	REPI-	. . .	
추가심사	점	REPI-	. . .	

[조정기준]

- 재범가능성 “낮음”, “보통” 의 경우 REPI등급 상향 조정 가능
- 재범가능성 “높음”, “매우 높음” 의 경우 REPI등급 현등급 유지 가능

※ 위 조정 기준을 준수하되 최종적인 판단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

[작성대상] : 제74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